

2019년도 4/4분기

공익제보 신고접수 현황보고

2020. 2.

감사위원회

1. 개요

□ 관련근거

-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7항
“신고 접수현황에 대해 시의회는 분기별로 보고받아야 하고 관련 조치를 하여야 한다.”

□ 보고대상

- 기 간 : 2019. 10. 1. ~ 12. 31.(2019년 4분기)
- 대 상 : 서울시 공익제보지원센터에 온라인(원순씨 핫라인) 및 오프라인(우편, 방문 등)으로 공식 접수된 공익제보

□ 접수결과

- 2019년 4분기 총 154건 접수

[표 1] 2019년 4분기 창구별 접수현황 (단위 : 건)

접 수 창 구	합 계	10월	11월	12월
공직자비리신고	94	36	22	36
공 익 신 고	60	21	23	16
부 정 청 탁	0	-	-	-
퇴직공무원특혜	0	-	-	-
합 계	154	57	45	52

2. 제보경로 및 발생기관 분석

□ 제보 경로 분석

[표 2] 제보 경로별 접수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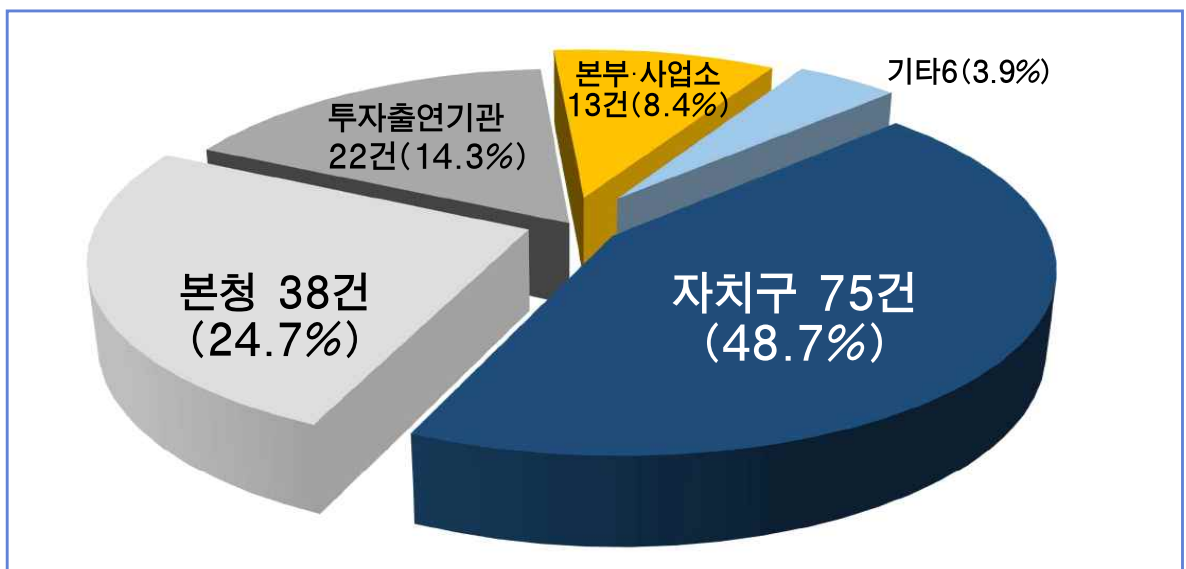
(단위 : 건)

경로	합 계	온 라 인 홈페이지/모바일	국민신문고 시스템 연계	기 타 응답소/우편/방문/팩스
접수건수	154 (100%)	142 (92.2%)	7 (4.6%)	5 (3.2%)

*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정부 통합 민원 창구임

□ 접수 제보별 소관사무 분석

- 자치구 소관 사무 관련 제보가 75건(48.7%)으로 가장 많았음
 - 건축법/주택법/하천법 위반 등 시민 생활상의 공익신고 26건
 - 자치구 직원 복무 및 불친절 등의 공직자비리신고 49건
- 본청 소관 사무 제보 38건(24.7%), 본부/사업소 소관 13건(8.4%)
 - 본청의 경우 공익신고 12건, 공직자비리신고 26건 등 접수
 - 본부/사업소의 경우 공익신고 7건, 공직자비리신고 6건
- 그 외에 시 투자출연기관 소관 제보가 22건(14.3%), 기타 6건(3.9%)
 - 시 투자출연기관의 경우 공익신고 13건, 공직자비리신고 9건
 - 기타 6건은 시 소관사무가 아니거나 불명확한 건



3. 공익제보 분류

□ 제보내용의 분류

○ 접수된 154건 재분류 결과, 공익제보 요건에 부합하는 제보는 90건

[표 3] 접수 공익제보 재분류 결과 (단위 : 건)

총계	공익제보 해당 90건		일반민원/기타
	부패신고	공익신고	
154 (100%)	56 (36.4%)	34 (22.1%)	64 (41.5%)

* 청원/제안/건의/항의 등 일반민원 성격 제보는 공익제보로 보기는 어려우나, 공익제보 처리에 준하여 접수 답변하고 있음

※ 조례상 '공익제보' 해당 신고 범위

구분	개요	신고 대상 행위
부패 신고	부패방지법 제2조(정의) "부패행위"신고	1.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2. 공공기관의 예산사용,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·관리·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 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3. 위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, 권고, 제의, 유인하는 행위
공익 신고	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(정의) "공익침해행위"신고	식품위생법, 의료법, 공정거래법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, 환경,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규정한 284개 법률 위반행위 신고
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신고	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	공정한 업무수행, 부당이익의 수수금지, 업무숙지의 의무, 이해관계자로부터의 독립성 유지, 인지도된 부정행위신고 및 보고의무 등에 대한 행동기준 위반 등

4. 공익제보 내용 분석

□ 공익제보 해당 90건 세부내역

○ 부패신고 해당 56건 세부 내용

[표 4] 재분류 결과 부패신고 해당 내용

(단위 : 건)

구분	소관기관	건수	내 용
부 정 청 탁	투자출연기관	1	업무관련자에 대한 갑질 및 식사 등 요구
	소 계	1	
업 무 부 적 정	본 청	6	업무 추진 과정 중 고의 또는 미숙/부주의 행위 관련 (업무 부당행위 혹은 업무소홀)
	본부·사업소	1	
	자치구	8	
	투자출연기관	2	
	소 계	17	
불 공 정 행 위	본 청	2	입찰이나 채용과정의 불공정행위나 정책 추진상의 특혜제공 의심
	본부·사업소	2	
	자치구	2	
	투자출연기관	4	
	소 계	10	
복 무	본 청	4	초과근무/출장 부정 또는 불친절 등 공무원 복무 관련
	본부·사업소	2	
	투자출연기관	3	
	자치구	9	
	기 타	1	
	소 계	19	
품 위 유 지 위 반	본 청	1	공무원 등이 지켜야 할 품위유지 의무 미준수 행위 등
	본부·사업소	1	
	투자출연기관	3	
	소 계	5	
위 탁 및 보 조 금 련 단 체 관 련	본 청	1	(자치구 포함)위탁시설이나 보조금시설의 부당행위 의혹 관련
	자치구	2	
	투자출연기관	1	
	소 계	4	
총 계		56	

* 의심이나 추정하는 신고까지 포함하여 작성

○ 공익신고 해당 34건 세부 내용

[표 5] 재분류 결과 공익신고 해당 내용

(단위 : 건)

구 분	건수	소관기관	조치 상황	내 용
건 축 법	6	자 치 구	개선1, 해당없음5	불법 증축 변경 의혹 등
공동주택관리법	3	자 치 구	개선1, 조사중1, 취하1	장기수선충당금 사용의혹 등
공 유 수 면 법	1	자 치 구	해당없음1	구거부지 무단 사용
공중위생관리법	1	자 치 구	개선1	업소 내 해충발견 신고
국민건강증진법	1	본 청	권한없음1	명상 단체의 과대 광고행위
도 로 교 통 법	1	자 치 구	조치1	주차위반차량 신고
병 역 법	1	자 치 구	권한없음1	사회복무요원 근무 관련
사회복지사업법	1	자 치 구	취하1	자격 미소지자 근무 의혹
산 림 법	1	자 치 구	개선1	불법 벌목 단속요구
산업안전보건법	1	기 타	취하1	공사장 안전모 미착용
소 방 시 설 법	1	본부사업소	해당없음1	비상계단 미개방
식 품 위 생 법	1	자 치 구	조치1	업소의 보건증 미소지 등
아 동 복 지 법	2	자 치 구	조사중1, 취하1	시설 내 아동 방치 등
약 사 법	1	자 치 구	조사중1	약사아닌 사람이 약 조제
영 유아 보 육 법	1	자 치 구	조치1	어린이집 보육소홀
옥 외 광 고 물 법	2	자 치 구	개선1, 해당없음1	미신고 프래카드 단속요구
의 료 기 사 법	1	자 치 구	취하1	안경업소의 불법광고
의 료 법	1	자 치 구	해당없음1	병원의 진료거부 신고
주 택 법	2	자 치 구	해당없음1, 중복1	공동주택 내장재료 무단변경
직 업 안 정 법	1	기 타	권한없음1	직업소개소의 업무소홀
하 천 법	2	자 치 구	개선1, 중복1	교각 밑 불법노점 단속요구
할 부 거 래 법	2	기 타	취하2	업체의 청약철회요구 미수용
총 계	34			

* 의심이나 추정하는 신고까지 포함하여 작성

5. 처리 및 조치 결과

□ 처리 내역('20.2.18. 현재)

[표 6] 접수제보 처리 현황

(단위 : 건)

총계	처분 및 개선 49		종결 54				조사중	취하
	처분(조치)	개선 등	해당 없음	증거 불충분	중복 종결	권한 없음		
154	8	41	39	3	7	5	26	25

※ 개선 등 내역 : 구두경고, 주의촉구, 개선약속, 계도 및 그 외 행정지도 등 포함

※ 공익제보 조사 기간은 60일 이내이며, 필요 시 연장 가능

「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13조 제5항

□ 처분(조치) 내역

[표 7] 공익제보 조치 결과(요구 포함)

(단위 : 건)

번호	신고구분	신고 내용	처분기관	조치 내역
1	부패	폭행 혐의 자치구 직원 처분요구	자치구	징계 및 전보발령
2	부패	직원이 근무시간에 카페 활동	본청	신분상 조치(주의)
3	공익	보건증 미소지 업소 신고	자치구	행정처분 (과태료 640천 원)
4	공익	무단주차 신고	자치구	행정처분 (과태료 40천 원)
5	부패	시립시설 비품 입찰 부적정	본청	입찰취소 및 재공고
6	부패	구 위탁시설 부적격자 채용	자치구	위탁법인에 징계요구 등
7	공익	어린이집 보육소홀	자치구	시정명령1
8	부패	구 직원의 업무처리 부적정	자치구	신분상 조치(주의)